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2023. 5. 11.(목)
제34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현 의원) ······························ 1
2.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 13
3.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 25
4.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 41
5.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박정식 의원) ················ 61
6.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5
7.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4월 17일 홍성현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336호

○ 대표발의: 홍성현 의원

○ 발의일자: 2023년 4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일

2. 제정이유

○ 수상부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상자 추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충남교육상 수여자에 대한 시상 취소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6조제3호)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공무원” 을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으로 규정함

○ (안 제11조의2)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상 수상자의 자격에 기존에 제외되어 있는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을 추가로 포함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였고, 2022년도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의 ‘개정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충남교육상 수여자에 대한 시상 취소 규정을 신설한 것은 내실있고 투명한 충남교육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례 통과 후 안 제11조의2(시상의 취소)의 신설조항에 대해 소속기관과 각급학교에 즉시 전파하여 추후 시상의 취소 사안이 발생할 경우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나. 관련법규: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4.3., 충청남도교육청)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4.4., 충청남도교육청)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3.29., 충청남도교육청)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 향상”을 “교육”으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남도교육감”을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중상의 금지)”를 “(중복수여의 금지)”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하”를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를 “충청남도의회”로, “10년이상”을 “10년 이상”으로,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 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

제8조 전단 중 “교육위원회”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진 (4cm×6cm)”를 “사진(4cm×6cm)”으로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제10조 중 “충청남도교육감소관공적심사위원회”를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충청남도교육상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
제2조(시상권자) 충청남도교육상(이하 “교육상”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준다.	제2조(시상권자) -------------------------------------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제4조(이중상의 금지) (생 략)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생 략)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교육상 수상자는 충청남도교육감 산하 각급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시상 당해년도 5월 15일 현재 10년이상 근속하여 충청남도교육발전에 매우 큰 업적이나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 소속 ------------------------ 충청남도의회------------------------------- 10년 이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공무원	3. -------------------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　설>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 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벌금형 이상의 수형자 또는 기소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중인 자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본청(교육위원회 포함)의 과장(담당관 포함), 교육장, 고등학교장, 교육감 소속의 직속기관장과 충청남도 소재 지방행정기관의 장(도지사, 시장ㆍ군수)이 추천한다.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충청남도의회 --.
제9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서	제9조(추천서류) ------------------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 --------------------------
1. 추천서 (서식 1호) 1부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 (서식 2호)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공적요약서 (서식 3호) 1부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명함판 사진 (4cm×6cm) 1매	5. ---- 사진(4cm×6cm) ----
제10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충청남도교육감소관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10조(공적심사) ----------------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수상자 결정) 교육상 수상자의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신　설>	제11조의2(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4781호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 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충청남도교육상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권자) 충청남도교육상(이하 “교육상”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준다.

제3조(시상시기) 교육상의 시상은 매년 스승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이중상의 금지) 교육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등교육부문 2명
2. 중등교육부문 2명
3. 교육행정부문 2명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2명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교육상 수상자는 충청남도교육감 산하 각급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시상 당해년도 5월 15일 현재 10년이상 근속하여 충청남도교육발전에 매우 큰 업적이나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로 한다.

1. 초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원과 초등교육 및 유아·특수교육 전문직
2. 중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중등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
3.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비위사실로 징계처분 된 자
2. 벌금형 이상의 수형자 또는 기소중에 있는 자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상패 및 부상을 준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삭제97. 3. 10조례 제2643호>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본청(교육위원회 포함)의 과장(담당관 포함) 교육장, 고등학교장, 교육감소속의 직속기관장과 충청남도 소재 지방행정기관의 장(도지사, 시장·군수)이 추천한다.

제9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추천서 (서식 1호) 1부
2. 공적조서 (서식 2호) 1부
3. 공적요약서 (서식 3호) 1부
4. 피추천자의 공적증명자료 1부
5. 명함판 사진 (4cm×6cm) 1매

제10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충청남도교육감소관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교육상 수상자의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수상자의 자격)는 제3호 교육행정부문 수상자의 자격 범위를 '지방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의 부문별 시상 인원에는 변동이 없음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안 제11조의2(시상의 취소)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그 밖의 조항은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문구 추가 등 조례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4월 17일 윤희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337호

○ 대표발의: 윤희신 의원

○ 발의일자: 2023년 4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일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학교에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육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5조) 활성화계획 수립

❍ (안 제6조) 교육실시

❍ (안 제7조) 지원

❍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역사교육’,‘학교’,‘학생’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에서는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교육 실시)**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7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역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역사교육 강화 사업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미래 세대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며,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역사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2항 3호에는 「교직원 역량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직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교직원 중 학교관리자 및 역사담당 교사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발전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역량 강화 대상을 교직원 전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후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에 대해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1항[1]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3항[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교육 실시) 2항에 따라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학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학습도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활동의 일부로 판단되는바, 조례안 통과후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역사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본 조례 제정으로 역사교육 활성화에 대한 근거 법규가 마련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역사교육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에서「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1】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2021. 1. 4.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2021. 9. 2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2015. 7. 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	2017. 12. 29.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2021. 1. 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2. 1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2021. 6. 1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0. 17.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3.17., 충청남도교육청)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3.22., 충청남도교육청)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3.27., 충청남도교육청)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에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교육"이란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류사회 변천과정 또는 그 기록에 관하여 학생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역사교육 참여 확대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ㅇ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단, 조례안 제5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함

ㅇ 조례안 제5조제2항제2호(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5조 제2항 제3호(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역사교육 참여 확대), 제6조(교육실시), 제7조(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민주시민교육과)에서 '역사교육 운영'사업을 기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아래 기 추진 사업 현황표 참고

ㅇ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기 추진 사업 현황 】

❶ 사업명/부서 : 역사교육운영 / 민주시민교육과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역사교원연수	교원 역사교육 역량 강화 연수(2회)	29,600	안 제5조제2항 (제3호)
독도영상관	독도영상관 수신료(10회)	198	안 제6조
교육자료구입	역사교육관련 교육자료 구입·배포 (초·중·고 737교)	30,000	안 제5조제2항 (제2호)
홍보캠페인	언론사 홍보캠페인(12회)	60,000	
학생동아리지원	향토사 학생동아리 운영(40교)	60,000	안 제7조
이순신상 시상	포상금 및 운영비(1회)	22,000	
역사기념일 운영	5·18 및 기림의 날 운영(2회)	6,800	안 제6조
합 계		**208,598**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❷ 사업명/부서 :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 / 민주시민교육과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청소년역사교실	청소년역사교실 운영 (초·중·고 학생 400명)	47,500	안 제6조
청소년역사한마당	충청권 공동역사교육 운영 (초 10교, 고등학생 80명)	21,800	안 제6조
찾아가는역사교실	찾아가는 역사교실 운영 (450교, 700회)	90,000	안 제6조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교육	독립운동사적지탐방 보조금(1기관)	30,000	안 제6조
동학농민혁명 문예대회	동학농민혁명문예대회 보조금(1기관)	10,000	안 제6조
합 계		**199,300**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❸ 사업명/부서 : 평화·통일, 역사·독도 교육 지원 / 민주시민교육과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학교운영비 (기타운영비)	평화·통일, 역사·독도 교육 지원	567,500	안 제7조
합 계		567,500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

학생수	산 출 내 역	대상교
100명 미만	700,000원×304교= 212,8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100명~499명	800,000원×245교= 196,0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500명~999명	900,000원×123교= 110,7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1000명 이상	1,000,000원×48교= 48,0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합 계	567,500천원	총 720교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4월 17일 홍성현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338호

○ 대표발의: 홍성현 의원

○ 발의일자: 2023년 4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일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내 장애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 (안 제5조) 사업

○ (안 제6조)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등 지원

○ (안 제7조)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❶기본방향 및 기본목표, ❷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❸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❹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 ❺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사업)**에서는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 문화예술 관련 교육,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등 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문화예술교육 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학생의 복지증진과 인성함양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됨

- 충청남도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4월 1일 기준 총 5,581명으로 10개 특수학교와 818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본 조례에 따른 직·간접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장애학생들에게 있어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문화 활동이나 예술활동을 증진시키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이나 문화교육 활동을 매개로 장애학생들의 성장을 유도하고, 개개인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으로 장애학생들에게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문화예술교육 지원) 3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전문인력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전문인력 참여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궁극적으로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원임용 단계부터 교원들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본 조례 제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어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2개 교육청에서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1】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	2017. 7. 7.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20. 5. 14.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1.19., 충청남도교육청)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1.17., 충청남도교육청)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1.13., 충청남도교육청)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인재"란 장애학생 중 문화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
5.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등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8768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table>
<tr><td>평가대상
(자치법규명)</td><td colspan="3">『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td></tr>
<tr><td>평가담당</td><td>(소속) 감사관</td><td>(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td><td>(성명) 유정기</td></tr>
<tr><td>소관부서</td><td>교육과정과</td><td>통보(조치)일</td><td>2023. 1. 17.</td></tr>
<tr><td>관련조문</td><td>검토결과</td><td colspan="2">조치사항</td></tr>
<tr><td>제5조(사업)</td><td>○ 개선 권고</td><td colspan="2">○ 보조·지원의 사용한계(목적 외 사용금지)와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공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목적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제정 후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교육과정과)에서 조항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자체 수립·시행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5개년 계획, (연도별)충남 특수교육 운영 계획

○ 안 제5조 ~ 제7조는 비용이 발생하나 충남교육청에서 기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소 계		641,427	
교육과정과	장애학생문화예술활동(특교)	563,640	
	문화예술활동 지원	77,640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
	문화예술활동 운영(학교회계전출금)	486,000	
	특수교육연수운영(특교)	77,787	
	교원 연수 운영	54,480	안 제7조 제2항 내지 제3항
	특수교육연수운영 분담금(국립특수교육원)	23,307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조항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신순옥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353호

○ 대표발의: 신순옥 의원

○ 발의일자: 2023년 4월 26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일

2. 제정이유

○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 지고 있음

○ 이에 충남도내 학교 재학생 중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4조) 지원계획

○ (안 제5조)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등

○ (안 제6조)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 존중

○ (안 제7조) 보호자 교육

○ (안 제8조) 교직원 교육

○ (안 제9조) 대응지침

○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 (안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가족구성원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지원계획)**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❶목표와 방향 등, ❷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❸보호자 교육, ❹교직원 교육, ❺피해학생 상담 등, ❻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❼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등)**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 존중)**에서는 교육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 **안 제7조(보호자 교육)**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에게 ❶성폭력 피해가 발생 시 대응방법, ❷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❸성폭력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교직원 교육)**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❶성폭력 피해학생 발생 시 대처 절차,

❷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❸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등 보살핌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9조(대응지침)**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급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충청남도청, 교육부 등 공공기관, 여성·인권·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에서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청소년 즉,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성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더 악화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적 발달이 저해받고 있는 상황에 성폭력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보호자 교육)은 피해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부모도 피해학생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교육 진행시 부모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심리 안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도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기속행위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추는데 의의가 높다 하겠으며, 외부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등 여러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안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에 따라 성폭력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함

- 다만, 집행부에서는 가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본 조례 제정으로 성폭력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하겠음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2개 교육청에서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1】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2021. 1. 4.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2022. 4. 7.

【참고2】 성폭력의 유형(법률상 분류)

법률명	행위유형	비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제7조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제7조의2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제9, 10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4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5조의2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17조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등	제3조
	특수강간 등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제8, 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제3조~제9조, 제14조의 미수범	제15조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제301조 제301조의2
	미성년자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
	강도강간	제339조
	제339조의 미수범	제342조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4.24., 충청남도교육청)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4.24., 충청남도교육청)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4.24., 충청남도교육청)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 피해학생"이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또는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가족구성원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등
2.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3. 보호자 교육
4. 교직원 교육
5. 피해학생 상담 등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7.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등)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 존중)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호자 교육)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피해가 발생 시 대응방법
2.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3. 성폭력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직원 교육)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피해학생 발생 시 대처 절차
2.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3.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등 보살핌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응지침)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급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충청남도청, 교육부 등 공공기관, 여성·인권·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 · 중등교육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2조(학교의 종류)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5호, 2021. 7. 1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 대 상 사 유 서

요 청 인 : 신순옥 의원	담 당 : 한태식 담당관 김정미 예산정책팀장 홍종식 주무관
접 수 일 : 2023. 4. 19.(수)	
회 신 일 : 2023. 4. 26.(수)	내용문의 : 041-635-5207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충 청 남 도 의 회
(예 산 정 책 담 당 관)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 및 지원, 치유와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학생 상담사업을 추진하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과 피해 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5조, 안 제7조~10조)

  · 안 제4조(지원계획)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이미~~ 2023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은 없음

  · 안 제5조(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안 제7조(보호자 교육), 안 제8조(교직원 교육), 안 제9조(대응지침),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사업 추진, 부모 등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성폭력 피해 예방 대응지침 마련과 2차 피해 방지 노력,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충남교육청에서 2023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 추진 계획 및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고, 향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 예정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책무), 안 제6조(성폭력 피해 학생 상담 등), 안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학교폭력 피해 치유 프로그램 운영 / 민주시민교육과

(단위: 천원)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114,000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대응지침 제작	10,000	일반수용비, 개발수당 등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자료 제작	5,000	
협력체계 구축	1,000	일반수용비, 참석수당 등
합 계	**130,000**	

자료: 충남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354호

○ 대표발의: 박정식 의원

○ 발의일자: 2023년 4월 26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일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 책무

○ (안 제5조) 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 (안 제6조) 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 (안 제7조) 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

○ (안 제8조) 지원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각급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학생 수송용 차량', '안전승하차 구역'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각급학교 내 안전 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책무**)에서는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에서는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출입문과 각급학교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에서는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7조(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에서는 교육감은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❶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❷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보도 등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8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3조 1항에 각급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 보임

- 다만, 조례 통과 후 집행부에서는 각급학교에 대한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설치가 가능한 학교와 불가능한 학교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불가능한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외부 차량 진입시 교통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 조례임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원형교차로를 말한다.
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각급학교 시설에 인접한 도로에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출입문과 각급학교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 교육감은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다음 각 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1.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2.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보도 등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初·중등교육법**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등·하굣길 교통안전 및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권고하며, 신설 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8조)

  · 안 제5조(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는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및 등·하교 차량의 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선언적·포괄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 안 제7조(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신설 예정인 학교시설에 인접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자가 안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설치[3]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안 제8조(지원)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교(신설 및 이전 학교 포함) 내 보도·차도 분리 시설 및 한 줄 운행 승하차 시설 설치를 위한 '학교 내·외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3) 조례안 제7조 각 호의 사항(안전승하차 구역, 학교 주변 보도 확보 등)을 설치하는 주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임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학교시설환경개선 / 안전총괄과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본예산	추경(예정)	
교내보차도분리	학교 내 보도·차도 분리 시설 설치 (추경 5교)	0	288,470	안 제5조, 안 제8조
한줄운행승하차시설	한 줄 운행 승하차 시설 설치 (본예산 1교, 추경 1교)	94,527	382,820	안 제6조, 안 제8조
소 계		94,527	671,290	
합 계		**765,817**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충남교육청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참고1] 학교 내·외 교통안전시설 사업 추진 현황 - 보차도 분리

① 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시설 설치

(단위: 교,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본예산	추경	
학교수	39	37	22	-	5	103
사업비	571,262	1,711,635	1,698,740	-	288,470	4,270,107

< 사업비 지원 세부내역 >

연도	지역	급별	지원학교수	사업비(천원)	비고
2020	천안	초	2	13,200	
		중	2	134,200	
	공주	초	6	80,110	
		중	3	40,922	
	보령	초	2	17,280	
		고	1	14,504	
	논산계룡	초	2	9,900	
		중	2	12,900	
	당진	초	1	20,202	
	금산	초	3	48,498	
		중	2	10,300	
		고	2	19,680	
	부여	중	1	8,578	
	서천	초	2	22,850	
		중	2	10,048	
		고	2	90,440	
	홍성	초	1	4,000	
		중	1	11,000	
	태안	초	1	1,750	
		중	1	900	
소 계			39	571,262	

연도	지역	급별	지원학교수	사업비(천원)	비고
2021	천안	초	3	30,770	
	공주	초	2	90,220	
		특	1	34,776	
	보령	초	1	42,925	
		중	1	23,510	
	아산	초	2	190,045	
	서산	초	1	33,000	
	논산계룡	초	2	78,480	
		고	2	24,595	
	당진	초	3	110,188	
		중	1	6,410	
		고	2	84,492	
	금산	초	3	317,603	
		중	1	15,195	
	부여	초	1	38,320	
	서천	초	3	263,250	
		고	1	18,860	
	청양	초	2	59,208	
	홍성	초	2	26,000	
		중	1	21,000	
	예산	중	1	108,771	
		고	1	94,017	
소 계			**37**	**1,711,635**	
2022	천안	고	2	11,500	
	서산	중	1	20,020	
		고	1	83,020	
	논산계룡	초	1	5,000	
		중	1	2,500	
		고	2	47,216	
	당진	고	1	303,638	
	금산	초	1	39,085	

연도	지역	급별	지원학교수	사업비(천원)	비고
2022	금산	중	2	95,027	
		고	1	6,250	
	부여	초	1	299,395	
	서천	중	1	6,150	
		고	2	168,500	
	홍성	고	1	196,200	
	예산	초	1	1,950	
		중	2	266,312	
	태안	고	1	146,977	
소 계			**22**	**1,698,740**	
2023	제1회 추경예산(예정)		5	288,470	본예산 미편성
합 계			**103**	**4,270,107**	

[참고2] 학교 내·외 교통안전시설 사업 추진 현황 – 한줄운행 승하차

② 초등학교 학부모 차량 한줄운행 승하차 시설 설치

(단위: 교,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본예산	추경	
학교수	13	7	1	1	22
사업비	585,726	1,687,629	94,527	382,820	2,750,702

< 사업비 지원 세부내역 >

연도	지역	급별	지원학교수	사업비(천원)	비고
2021	공주	초	1	18,420	
	보령	초	1	4,050	
	아산	초	3	24,100	
	논산계룡	초	1	27,700	
	부여	초	1	28,979	
	서천	초	1	19,280	
	홍성	초	2	329,681	
	예산	초	3	133,516	
소 계			13	585,726	
2022	보령	초	2	482,446	
	서산	초	2	654,456	
	당진	초	2	298,149	
	태안	초	1	252578	
소 계			7	1,687,629	
2023	논산계룡	초	1	94,527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예정)		1	382,820	
소 계			2	477,347	
합 계			22	2,750,702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357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4월 27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일

2. 개정이유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5476(2021.12.31.) 「2021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알림」에 의해 ‘약칭문 띄어쓰기 정비 등 일반정비 필요, 관련 법령 및 타시도 조례 개정 내역을 반영하여 알기 쉽도록 점진적 개정이 필요’로 통보되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개정 추진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1AB-2012-0005233, 2020.12.17.)에 의해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대한 부조리 정의 개정 제안이 채택되어 추가적인 후속 조치로 제2조제2호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 (안 제2조)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로 재정손실 대상기관으로 교육청과 함께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였음

○ (안 제3조) 보상금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고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대상의 명확화를 도모하였음

○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의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에 법률 및 회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감사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외부위원의 부조리 보상금 심사 전문성을 확대·개선하고자 하였고, 외부위원의 해촉관련 규정을 반영하였음

○ (안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에 ‘그 밖에 부조리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외 추가사항 발생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0조) 시행규칙에 충청남도의회 사후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보상금’으로, ‘규칙으로 따로’를 ‘교육규칙으로’으로 수정하였음

○ 충청남도의회 사후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에 대한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음

4. 검토 의견

○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중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를 재정손실 대상기관으로 교육청과 함께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확대한 것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의해 채택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2021년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의견을 수용하여 일반 문구에 대한 띄어쓰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교육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3.3.13.~2023.4.4.)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3.23., 충청남도교육청)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바.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행위”를 “해당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육청”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를 “신고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로 한다.

제10조 중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회계 전문가 등 해당분야”를 “회계전문가, 감사전문가 등 해당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업무 담당 장학관·사무관”을 “해당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감은 외부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중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보상금”으로, “규칙으로 따로”를 “교육규칙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부조리 행위”란 공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생 략) 3.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해당하는 행위------. 가. (현행과 같음) 나. --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 신고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신고 기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신고 기한)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1. 외부위원은 부조리 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1. --- 회계전문가, 감사전문가 등 해당 분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해당업무 담당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④ -- 해당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신　설>	⑤ 교육감은 외부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현　　　행	개　정　안
	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생　략)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보상금 -- 교육규칙으로--------.

충청남도 조례 제4788호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등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 기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 방법 등) ① 부조리 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교육청 감사관실(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해야 하고 감사부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부조리 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조리 행위 내용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적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단, 긴급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감사부서 공직자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신고 내용,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암시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않는다.

제7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제6조제3항을 제외한 신고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보직 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기관·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직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피신고자 또는 다른 사람 누구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문의·탐문 등의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행위로 인해 보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 내용을 즉시 조사하고, 보복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협조자의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제10조(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보상금의 지급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외부위원은 부조리 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2. 내부위원은 교육청의 감사관을 포함한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직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해당업무 담당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요건,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자, 관련 공직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 지급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신청) 신고자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요건,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리인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삭제>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5. 부조리 행위의 수사·조사·감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7.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19조(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 후에 제1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대상의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정비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감사총괄서기관 임문희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358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4월 27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일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조례에서 이를 따르도록 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서 학원보험 배상금을 1억원 이상에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4. 검토 의견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학원과 교습소의 보험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하는 것은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는 조치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보험가입 한도액을 정하는 근거 법령인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이 2021.6월경에 제·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집행부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 근거법령이 제·개정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3.2.22.~2023.3.16.)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없음(2023.3.2., 충청남도교육청)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3.9., 충청남도교육청)

바. 행정규제심사: 원안가결(2023.3.29., 충청남도교육청)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1억원” 을 “1억5천만원”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원설립 · 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 · 교습소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u>1억원</u> 이상 2.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조(학원설립 · 운영자 등의 책무) ① --. --. 1. ----------- <u>1억5천만원</u> ---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231호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 및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은「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급수시설・화장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의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면적은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면적은 60㎡ 이상으로 하되, 1㎡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면적은 4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과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지하실은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은 강의실이 속해 있는 동일건물 또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 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화장실은 남ㆍ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ㆍ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ㆍ여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8. 숙박시설(급식시설 포함)은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3조의5 <삭제>

제3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①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와 영 제5조의2,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

제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행정처분 종류는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교습중지로 하되, 교습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 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삭제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31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따라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 2022. 2. 18. 시행]

제4조(학원설립 · 운영자 등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 ·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8685호, 2023. 1. 5. 시행]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 ·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7. 〈생략〉

②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5. 시행]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② <생략>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법 제3조제10의2호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고시 [별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제2조 1호 관련)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40.(생략)

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2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장 구본용